

한국교육행정학회소식지

THE NEWSLETTER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ie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제96호
2008. 7. 30

■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www.kssea.or.kr) ■ 발행인 김명수 ■ 편집인 김도기, 천영진
■ 주소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한국교원대학교 인문관 309호
■ TEL • FAX 043-321-2719 ■ E-mail kssea1@hanmail.net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 (www.kssea.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학문연구의 정직성에 대한 반성

신 재 철 (본회 부회장, 전남대학교)

근래 들어 필자는 글쓰기가 매우 두렵다. 왜냐 하면, 요즘 대학교수들의 연구윤리문제가 뜨겁게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논문과 관련된 문제로 교수들이 언론에 의해서 윤리적으로 매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윤리문제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뿐만 아니라 교수집단과 대학사회의 윤리성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일로 필자는 그동안의 학문활동이 과연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일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많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필자 자신도 이런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인지 확신할 수가 없는 것 같다. 필자는 이 글에서 연구윤리의 규범에 위반되는 현상을 생각해 보고, 그러한 위반행위는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밝혀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연구 또는 학계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부당행위 또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첫째, 실험조작을 들 수 있다. 연구자가 실험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기대한 연구결과를 조작하여 작성한 논문을 게재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즉 자료나 실험결과를 고의로 조작하는 행위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료나 실험 조작행위는 ‘연구사기’이며 기만행위이다. 자료 또는 실험 조작행위는 사실 같은 학문영역의 연구자들도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논문을 읽거나 참고하는 전문가들은 해당 논문

주: ①)이 글은 “Kennedy, D.(2006). 학문의 의무(Academic Duty). (이지현·김선·김선구·김희봉·박경숙·이정화·장정훈 역, 원전출판: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1997). 서울: 도서출판 학이당”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실험계획에 따라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얻어진 실험의 결과로 신뢰하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의 조작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둘째, 표절하는 행위이다. 이는 남의 글을 베껴서 자기 글인 양 발표하는 행위이다. 이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와 다름없다. 따라서 실험결과의 조작행위와 마찬가지로 연구윤리의 위반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이다. 그런데 최근 자기표절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기표절이란 본인이 이전에 발표한 글의 내용을 인용부호를 표시하지 않고 베껴 쓰는 행위이다. 자기표절문제는 범죄를 구성하는 절도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지라도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과 무조건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라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연구논문을 여러 개로 보이기 위한 행위인지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양립해 있다(교수신문, 2008. 6. 30: 3). 자기표절과 유사한 이중계재 행위가 있다. 이는 하나의 연구 또는 창작활동의 결과를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이다.

셋째, 연구비 이중수혜 행위이다. 이는 동일한 연구 주제로 두 곳 이상의 연구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를 가리킨다. 연구비 이중 수혜행위는 연구자가 당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한 곳의 재정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지만 연구지원자들을 속이는 행위로서 사회와 연구지원자들의 동료연구자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분할(salami) 출판 행위이다. 이는 하나의 연구결과를 여러 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각각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할출판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실적을 부풀리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과 남을 속이는 행위일 뿐 아니라 논문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다섯째, 공동저자의 문제이다.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지도교수가 제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한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록하거나 거꾸로 지도교수의 논문에 제자를 공동저자로 등록하는 경우이다. 물론 지도교수는 제자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 자신의 이론이나 생각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될 때 공동저자로 등록하는 것을 관례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지도교수가 그 논문의 제1 저자로 등록되는 정도가 심한 경우도 있다. 다른 하나는 ‘우대저자’로 등록하는, 즉 연구나 저서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사람을 저자의 목록에 등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행위는 우대를 받지 못할 사람에게 공적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위반한 행위이며, 다른 연구자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역사적 기록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는 왜 일어나는 것인가? 그 원인에 관하여 대략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경쟁이 최선의 생활원리가 되어 있다. 즉 경쟁만이 살길이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학계도 협력보다는 경쟁의 원리를 앞세운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대학의 경쟁력이 최고의 가치로 등장한지 오래다. 대학을 평가하는 경우에 사회는 물론 정부까지도

1등부터 꼴등까지 한 줄로 세우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는 대학의 교수에 대한 평가도 여러 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즉 사실상 한 줄로 세워야 좋은 평가로 취급한다. 더욱이 교수들의 연구실적은 양적으로만, 즉 논문의 개수만을 세어 평가한다. 이러한 연구풍토는 교수들로 하여금 논문의 질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연구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만든다. 이 때문에 위에서 지적한 연구윤리를 슬쩍 위반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는 것이다. 그래야만 임용되는 데, 또는 승진하는 데 그리고 성과급을 받는 데 유리하며, 더불어 학계에서 실력 있는 교수로 평가받고 사회적 명성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총장님은 읽을 줄은 모르지만 셀 줄은 안다”는 농담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는 논문의 질보다는 양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우리 학계의 풍토를 풍자한 말이다. 그리고 학문공동체에서 경쟁의 강조는 언제나 학문의 발전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 하면, 학문공동체에서 치열한 경쟁은 정보의 폐쇄를 초래하여 오히려 학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역기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과거의 관행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우리 학계가 실험결과를 조작하거나 남의 글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자기표절의 문제이다. 자기표절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내 글이니까 그냥 베껴 써도 남의 글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많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자기표절의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 또한 중복게재 문제도 한번 특정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나 간행물에서 이미 간행된 것이라도 괜찮으니 게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학들이 교수를 평가할 때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에 게재한 것만 연구실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등재(후보)지로 평가를 받지 못한 교내 학술지나 신생 학술지들이 게재할 논문이 부족하여 논문 수를 채워 발간하려다 보니 중복게재의 문제를 일으킨다.

셋째, 연구자들의 온정주의로 인하여 우대저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대저자 문제는 지도교수가 자신의 연구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제자의 연구실적을 올려주기 위하여, 제자가 자신이 단독으로 수행한 연구에 지도교수의 연구실적을 올려주기 위하여, 또는 한 저자가 자신의 연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동료들을 공동저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출간된 연구에 대한 지적 소유권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 연구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책임소재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것은 학문공동체를 속이는 일이며, 학문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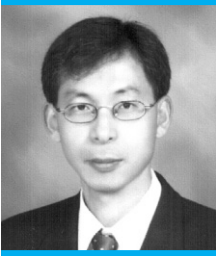
그러면 이러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어떻게 방지해야 하는가? 논문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연구실적을 평가할 때 양적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 즉 논문의 질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논문의 질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논문의 질을 평가하라고 말하기는 쉬워도 그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 방법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평가방법이 비교적 쉽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논문 수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논문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일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할 텐데 심사받기 위하여 제출된 논

문들은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이미 심사를 거친 것들이 때문에 이중심사의 문제가 있다. 어떤 학자는 논문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논문의 인용빈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실지로 그렇게 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인용빈도 측정도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동료교수들끼리 서로 동료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신생 학문이나 인기없는 학문분야 또는 학문적 기반이 다른 소수 학파의 논문은 거의 인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용빈도 측정은 논문의 질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논문의 질을 판단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필자로서도 논문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기가 현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서는 다만 교수를 평가할 때 평가대상의 논문 수를 제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논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대학들이 연구·검토하여 평가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라는 다소 공색한 제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략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지금부터라도 교수집단이 자정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즉 교수들이 자성하여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연구윤리 위반행위, 특히 그동안 소홀하게 여겼거나 관행으로 생각했던 자기표절, 우대저자, 중복게재, 분할출판 등을 스스로 거부해야 할 것이다. 학문의 공동체에서, 특히 대학에서 교수는 연구자이자 교육자이다. 교육자는 항상 학생들의 본(model)이 되어야만 전문가로서 그리고 교수로서 권위를 유지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한 인간으로서, 전문가로서, 또는 교수로서 또는 전문가로서 권위를 상실할 때에는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그 때문에 대학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교수(polifessor), 표절 또는 실험조작 등의 문제로 교수집단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다.

둘째, 대학에서 학문후속세대에게 학문의 정직성을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한다. 특히 교수들이 학생의 논문작성을 지도할 때 작성되고 있는 논문 내용이 표절한 것은 아닌지, 인용근거문헌을 철저하게 밝히고 있는지, 연구과정이 해당 영역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어떠한 해악을 수반하는지 등에 관해서 적절하게 지도해야 할 것이다. 학문후속세대는 다음 세대의 학문풍토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들의 철저한 논문지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문공동체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필요한 노력은 각 학회의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논문의 중복게재 가능성 여부를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사전검증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출판된 적이 있거나, 이전에 평가(심사)를 받은 적이 있거나, 또는 연구결과가 공표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또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학회의 윤리강령에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논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논문제출자에게도 숙지시켜서 위반 시 제재조치를 받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I 논란 I I

교육정보 공시제도의 의미와 과제

오 세 희 (인제대학교)

2007년 5월 2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 형태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정보공시법’이라 한다) 제정되어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교육정보공시법은 교육정보의 공시와 관련하여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횟수, 시기 등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11월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의 개편 및 학업성취도, 고등교육기관의 취업률을 포함한 교육정보 공시의 범위와 항목 등을 둘러싼 쟁점 등으로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지연의 이유는 교육정보 공시 도입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준비 및 적극성 부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정보 공시의 범위 및 구체적인 항목, 공시 방법 및 시기, 공시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교육관계 당사자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아직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육정보공시법은 그 명칭에서 정보공개라고 있으나 다루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은 주로 정보공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에서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즉, 정보의 공개는 청구권자인 국민의 요청에 의해 당해 정보의 열람이 청구되고, 해당 기관은 정보의 열람 여부 및 열람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되며 그 공개의 방법으로는 열람, 사본·복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정보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시는 청구권자의 요청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여부에 관계없이 교육관련기관이 법이 정한 정보공시대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정보공개와 차이가 있다.

그 동안 교육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 교육관련기관들은 그들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교육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다. 즉 정보공개법에 의해 요청이 있을 때에만 마지못해 공개하거나 혹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공표하는 정보들만을 공개함으로써 학업성취도, 대학의 취업률 등과 같이 정작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비공개된 채 교육정보가 마치 교육관련기관

들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하여, 성적 및 취업률 부풀리기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관련기관들이 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정보공시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학술 및 정책연구의 진흥’,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며 초·중등교육기관은 15개영역, 고등교육기관은 13개영역의 정보를 <표 1>과 같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 1〉 공시대상 정보

구분	초중등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내용
내용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 변동 상황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5. 교지(교지), 교사(교사)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6. 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7.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13.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이러한 교육정보의 공개로 첫째, 학교교육의 질이 제고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항 중의 하나인 학력관련 자료들이 개별학교 단위로 공개됨에 따라 학교간의 경쟁을 촉진하며 교육성과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된다. 또한 학교폭력, 급식, 보건 등이 공개됨으로써 학교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둘째, 객관적인 교육정책 논의가 가능하다. 즉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평가적 논의가 활성화될 것이다. 셋째, 특히 대학과 관련되어서는 정보 공시로 대학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대

학의 구조조정이 촉진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즉 성과가 부실한 대학에 대한 학생의 선택이 줄어들어 구조조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대학들은 취업률 제고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노력할 것이다. 넷째,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정보공개에서 나타난 지역별, 학교별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행·재정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육정보 공시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로서 교육관련기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전문가, 교육수요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다양하고 상반된 논란이 있어 교육정보 공시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먼저 교육정보공시법 및 시행령(안)에 따르면 공시대상 정보는 초·중등교육기관의 경우 15개영역 49개 항목, 고등교육기관은 13개영역 51개 항목에 이르고 있다. 정보의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광범위하고도 충분한 정보를 생산하도록 하게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정보가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항목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공시대상기관의 입장에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교육수요자와 공시대상 기관 등을 고려한 교육정보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업성취도, 대학의 취업률, 교원 등과 같이 특별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가는 정보들의 세부적인 공시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교육정보공시법은 초·중·고 학교장은 매년 1회 이상 국가 또는 시·도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정보공시 제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교육정보공시법의 입법 취지 및 교육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보공시가 교육수요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정보공시 시기가 적절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교육정보 공시 시기가 막연히 4월로 되어 있는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가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학교가 다시 조사하여 공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정보공시 시기를 결정할 때에 중요한 것은 정보의 생성 및 변경 등의 시점이므로, 공시항목에 따라 보다 공시시기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정보공시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기 하기 위하여 총괄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는 수요자가 쉽게 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이나 아직까지 정보공시에 필요한 양식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공시대상 기관은 교육정보공시를 목전에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공시에 필요한 양식과 운영표준 등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정보공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야 한다.

공시대상 정보는 초·중등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정보공시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공시대상 정보는 전혀 명시하지 않아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예컨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 어떤 정보를 어떤 범위까지 공개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보공개제도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관련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정보공시 항목과 범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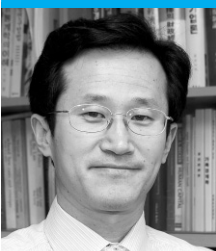
교육정보공시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선결과제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privacy)의 보호문제이다. 교육정보공시법은 이를 위하여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시는 인터넷을 통하여 하도록 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 개인정보의 유출 및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정보화의 진전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개인정보 보호 역시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선언적이 아닌 벌칙 규정을 두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교육정보공시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교육정보공시법은 이를 위해 거짓 공개 및 공시불이행에 대해 기관의 장에게는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보의 신뢰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출된 공시정보를 확인·검증하는데서 나아가 실제 해당학교 및 대학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표본으로 조사하여 정보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평가시스템을 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보화를 배경으로 한 교육정보 공시는 교육 및 학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 교육관련기관의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입법화되어 앞으로 우리 나라의 교육과 학교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사자들이 이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교 교육의 제고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 교육격차의 해소라는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지역간·학교간 서열화를 초래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육정보 공시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도입 및 그에 따른 여러 쟁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직 초·중등 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대한 논란으로 교육정보공시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오는 10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정보가 공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학교 및 대학을 포함한 교육관련기관들은 시행 전까지 교육정보공시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철저히 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인수(2005). 교육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교육정보공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김병주(2008). 교육정보공개법 제정과 그 문제점 : 고등교육 영역. 「대한교육법학회 제49차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 김창환 외(200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 교육인적자원부(2005). 「정보공개 업무편람」.
- 노기호(1998). 교육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공법연구」 제27집 제1호1. 한국공법학회.
- 박재윤·채재은(2005). 「대학정보공시제 시행에 관한 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박재윤·채재은(2006). 대학정보공시제의 법제화 방안 연구. 「교육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대한교육법학회.
- 이주호(2005) 「교육정보공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
- 이주호(2007). 「교육정보공개법 국회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 정순원(2008). 초·중등학교 교육정보공시법 및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대한교육법학회 제49차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 Redfield, Charles E.(1953). Communication in Management. Chicago University Press.



Ⅰ 논 단 Ⅱ

‘선발’에서 ‘양성’으로: 교장임용의 관점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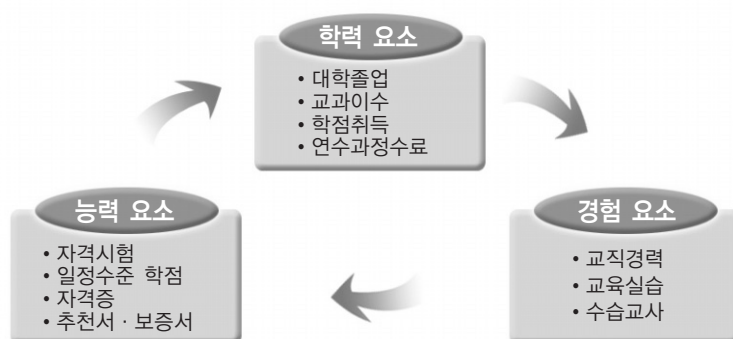
나 민 주 (충북대학교)

저는 최근 몇 가지 정책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교장임용의 패러다임이 ‘누구를 선발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로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구내용을 요약 소개하면서 학회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논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I

특정 직무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는 자격임용주의는 전문직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김

이경 외, 2004). 교직 역시 자격임용주의를 통해서 교직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공신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원자격증은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능력을 구비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증서입니다. 국제적으로도 교직에 자격임용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관련 사례나 연구를 종합해 보면, 교원자격의 구성요소들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학력요소, 능력요소, 경험요소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조석훈 외, 2007).



〈그림 1〉 교원자격의 구성요소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력을 의미하는 학력(學歷)요소에는 졸업장, 교과이수, 학점취득, 연수와 정수로 등이 포함됩니다. 경험 혹은 경력 요소는 교육과 관련된 활동의 이력을 말하는 것으로 교직경력, 교육실습, 수습교사경험 등이 있습니다. 능력요소는 지원자 개인의 능력을 평가 혹은 증명하는 것으로서 시험합격, 일정기준이상의 학점, 자격증, 전문기관 혹은 근무기관의 보증서 혹은 추천서 등이 있습니다. 교원자격을 규정하는 방식은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는 학력요소입니다. 교사양성 및 임용에서는 전통적인 학력요소 이외에 점차 수습기간, 교육실습과 같은 경험요소가 강화되어 왔고, 능력요소들도 중시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조석훈 외, 2007).

그러나 교장과 같은 교육행정가의 자격은 일반 교사와는 별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교장은 학교경영을 위한 지도성을 발휘해야 하고, 교사와는 다른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장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상의 교직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력요소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 영국에서는 교사양성과정과는 별개로 교장양성과정이 설치되어 있고, 교장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장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교장과 교사의 양성경로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교장자격 규정과 기준은 주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나, 대체로 대학원의 교장양성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장양성 과정은 대부분 사범대학에 설치되어 있고, 주교육위원회의 인증 혹은 정부부와 교사교육인증기관의 공동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 1990년대 중반 이후 교장자격기준을 표준화하고 주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컨소시엄(Interstate School Leaders Licensure Consortium)을 구성하여 교장자격기준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정영수 외, 2005; 주삼환, 2005). 영국의 경우,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교장자격(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Headship)이 필요한데, 국가교장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립교장연수원(National College for School Leadership)의 연수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합니다(나민주 외, 2008).

우리나라의 경우, 교장임용에서는 경력요소가 중시되고 있고 학력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최소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추고,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종 연수가 교장임용을 전제로 혹은 임용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장양성과정으로 서 성격이 미흡합니다. 또한 교원자격제도가 2급정교사, 1급정교사, 1급정교사, 교감, 교장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교장은 교사들이 승진할 수 있는 최종 목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교사가 곧바로 훌륭한 교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학교경영은 교과교육이나 교실교육과는 다른 전문적인 직무분야이기 때문입니다.

II

지난 해부터 정부에서는 교장공모제를 시범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하여 공모절차를 통해 교장을 임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1, 2차에 걸쳐서 112개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고, 올해 2학기부터는 추가로 78개 학교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교장공모제에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교원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해당학교의 교육과정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초빙교장형’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교장공모제에 관해서는 이해관련집단간에 커다란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탐색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점은 공모제 도입의 효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나민주 외, 2008).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근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능력검증, 연수과정을 통한 전문성 축적이 가능하다고 보고, 공모제에 대해서는 선발과정에서 정략적 이해관계로 적격자 선발이 곤란해지고 교장자격증 없이 교장이 될 경우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공모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연공서열중심의 승진제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비판하면서 공모제의 도입으로 학교상황에 맞는 능력있는 교장임용과 리더십 발휘를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공모제와 관련해서는 내부형, 개방형의 확대 여부에 관련당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교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혹은 그러한 자질과 능력을 판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인가입니다. 훌륭한 교사가 훌륭한 교장이 될 수 있다면 교직경력과 그 과정에

서 쌓은 실적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면 일정기간의 교직경력과 함께 부장교사, 교감, 장학사, 연구사 등의 경력을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능력이 중요하다면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나 능력심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요소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주장과 대안이 제시되었고, 그에 관해 첨예한 의견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장임용제도에 관해서는 이러한 규범적 논의도 있어야 하지만, 그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최근 수행한 연구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모로 임용된 교장의 배경변인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능력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 먼저 교장 자격증 유무에 따라 공모교장의 직무수행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경력년수와 공모교장의 직무수행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장교사, 장학사, 연구사 등의 경력과 직무수행 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교감경력년수 및 총경력년수와 직무수행 간에는 낮기는 하나 부적상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감자격연수, 교장자격연수, 자기연수 등의 관련연수시간과 공모교장의 직무수행 간에도 모두 부적상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의 소지학위별로, 공모교장의 직무수행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교육행정분야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장, 일반분야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장, 석박사학위가 없는 교장의 순으로 직무수행점수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나민주 외, 2008).

이 ‘의외의’ 통계분석결과를 보고 처음에는 상당히 놀랐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교장자격요소 가운데 학력, 경력, 능력의 각 요소를 어떻게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관점에서 보니 ‘의미있는’ 결과로 받아들여졌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장임용제도의 개선방향과 그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점이 간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승진제에서는 장기간의 교직실무 경험, 근무성적평정 등을 통해서, 그리고 공모제에서는 공모심사과정을 통해서 교장직무 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다양한 교육관련 경험요소들이 교장으로서 직무수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공모제는 능력요소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에서 공모교장이 같은 학교의 전임교장에 비해서, 그리고 일반교장에 비해서 더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공모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장자격증 유무에 따라 직무수행에 차이가 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자격증 없는 교장임용의 보편화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격임용제도는 전문직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교직도 그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도 개방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개방형은 보완적인 제도일 뿐입니다. 개방형 확대보다는 현행 자격제도를 교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종 연수를 강화하여 교장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교장자격연수나 개인적인 노력(연수)만으로 교장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III

기존의 승진임용제도는 물론, 교장공모제 역시 교장을 어떻게 선발하지에 관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교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선발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선발 이전에 교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력풀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장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에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의 관점에서 보면, 현행 교장임용제도에서 학력요소가 경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통계분석결과를 교원, 직원, 학부모, 학생, 학운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교장에 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된 것으로 한계가 있습니다만, 교육행정분야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장이 학교구성원들로부터 교장직무수행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교장임용에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에서 교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교장이 부임하느냐에 따라 학교의 분위기, 선생님들의 수업방식, 학생들의 학습태도,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의 인식과 지원 정도가 달라집니다. 교육의 과정과 결과는 교장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장의 권한과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교장을 임용할 것인지를 개선하는 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교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에 관해 연구도 상당수 축적되어 있습니다(서정화 외, 2003; 정영수 외, 2005; 주삼환, 2005 등). 학회 차원에서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여 정책이 입안되고 양성 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교장임용시 교육행정분야 석박사학위 소지자를 우대하고, 나아가 해당학위 소지를 지원요건으로 하는 방안을 도입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선발 후 연수’ 방식에서 벗어나 능력을 갖춘 교육행정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양성 후 선발’ 방식으로 교장임용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장임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단기간·일회적 연수나 자격연수를 통해서, 혹은 지원자 가운데 우수한 사람을 선별하는 소극적인 방법만으로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교장 자격 및 임용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교육행정분야 석박사학위 소지자에게 교장자격을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행평가로서 전문성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도록 양성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행 교육행정분야 대학원 교육과정도 교장의 직무수행 능력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실증자료가 분석되었지만, 실제 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학회차원에서 교장의 능력기준을 개발하고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행정분야의 대학원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회, 대학, 교육행정기관, 학교 사이에 긴밀한 연계협력망이 구축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교원자격 구성요소는 학력, 경력, 능력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교장임용에서는 학력요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합니다. 현재 교장임용과 관련해서는 승진제, 공모제 등 선발방법이 논쟁점이 되고 있으나, 학교경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논의의 초점을 선발보다는 교장양성과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학회 차원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와 협력을 기대해봅니다.

【참 고 문 헌】

- 김이경 · 고대혁 · 김재춘(2004). 교원자격 · 양성제도 개편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나민주 · 이차영 · 박상완 · 김민희 · 박수정(2008). 교장공모제 학교의 효과 분석. 지방교육연구센터.
- 서정화 · 이윤식 · 이순형 · 정태범 · 한상진(2003). 교장론. 한국교육행정학회.
- 윤정일 외(2008). 전환기의 한국교육정책. 학지사.
- 정영수 · 이윤식 · 김병찬 · 김용 · 박영숙 · 신상명 · 우정남 · 정일환 · 주삼환 · 진동섭(2005). 미래사회의 교육지도성 개발 연구. 충청북도교육청.
- 조석훈 · 나민주 · 김병찬 · 양성관(2007). 교원자격 및 양성에 관한 법령 제정방안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
- 주삼환(2005). 미국의 교장. 학지사.

※ 본지에 게재된 논단의 내용은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전통사회 ‘관학(官學)’의 존재와 교육행정

박수정 (충북대 지방교육연구센터)



“(교육행정) 학도들이 오늘의 현실을 파헤치고 골몰한 나머지, 역사적인 뿌리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을 은연중 소홀히 하는 태도(가 있었다)… 오늘의 우리 현실을 해명하는데 바빴고 그 과정에서 선진국의 이론이나 실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도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그 근원에 대해서는 성찰이 부족하였다.”

위 글은 김종철 선생님이 강길수 선생님의 책 <한국교육행정사 연구(1976)>에 대하여 쓴 서평 가운데 일부다. 한국 교육행정학계의 큰 스승이며 선구적인 교육행정학자로 일컬어지는 두 분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최근에 고인이 되셨다. 비록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는 못한 후학(後學)이지만, 존함과 저서, 그리고 전하여 들은 몇 가지 일화들을 통해서 ‘학문을 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거듭 깨닫고 있다.

다시 위 글을 읽어보자. 김종철 선생님은 1950년대 이래 교육행정의 역사적 연구를 개척하였던 강길수 선생님의 독보적인 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 역사적 연구에 대한 교육행정학계의 무관심을 예리하게 지적하였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이루어진 지적이지만, 오늘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근원에 대한 성찰’은 여전히 요원하기만한 학계의 과제일까.

교육행정사를 연구하는 신진 연구자로서, 필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동학(同學)들에게 ‘교육행정사 연구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 단계는 ‘교육행정사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교육행정사에 대한 학문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며 칼럼 연재를 시작한다. 필자는 교육행정사 연구를 평생의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은 의욕만 가득한 상태이다. 동학들의 관심과 질정(叱正)을 바란다.

우리의 교육행정사에서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공유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교육행정이 차지하는 위상을 가늠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무엇보다도 교육행정학계가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된 교육행정의 역사적 경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즉 전통사회에서 중앙과 지방의 행정력으로 학교를 운영해왔던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건을 마련하고 교육활동의 지속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교육행정 행위는 공적, 사적 차원에서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와 지역 단위로 학교를 운영해왔던 우리의 역사를 감안해볼 때 교육행정의 의미는 공적 차원에서 더욱 강하게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관(官)’으로 대표되는 국가 및 지방교육행정의 역할이 컸고, 교육행정의 각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전통사회에서 관학(官學)은 과연 어느 정도나 존재하였을까? 가장 가깝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조선시대의 경우, 성균관과 학당, 향교 등의 관학이 유학교육기관으로서 설립, 운영되었다. 그 가운데 지방의 관학인 향교를 살펴보자. 고려시대에도 향교가 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새롭게 ‘1읍1교(一邑一校)’ 정책을 펴 전국적으로 모든 읍에 향교를 설립하였다. 조선시대에 330여개의 읍이 존재하였으니, 총 330여개의 향교가 있었던 것이다. 읍을 새롭게 설치하면 반드시 향교를 세웠고, 읍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면 향교도 폐하였다.

그렇다면 동시대 외국의 상황은 어땠을까? 서구에서는 학교의 운영과 설립에 정부가 개입하는 시기가 동아시아에 비하여 늦다. 16-17세기 중국(명)과 일본(에도시대)을 비교해보기로 하자. 중국은 지역별로 관학이 있었고, 각 부(府), 주(州), 현(縣)에 설립된 학교가 총 1579개, 변(邊), 위(衛)(변경 및 특수 지역)에 설치된 학교가 대략 200여개로 총 1800여개의 학교가 있었다. 일본은 17세기가 되어서야 막부(幕府)와 번(藩)에서 유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1624년에서 1715년 사이에 설립된 번교(藩校)는 26개이다(에도시대에 설립된 학교의 수는 메이지 4년까지 총 295개교)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비교했을 때, 조선과 명, 일본의 학교 수는 330:1800:26이며, 한반도와 중국, 일본의 면적은 1:50:2 정도이다.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지방 관학을 보유한 나라는 중국이지만 국토의 면적을 감안한다면 조선이 단연 돋보인다. 학교 수의 규모 만을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6세기에 조선은 330개 정도의 전국적인 규모의 학교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히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다.

이러한 학교의 존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지도, 관리 활동으로서의 교육행정의 존재를 짐작하게 한다. 동시에, 많은 수의 학교가 존재하였다는 점은 교육행정의 발달과 체계화의 전제 조건이 된다. 조선시대 읍의 행정과 학교를 관할하는 책임이 있는 수령(守令)에게 ‘학교흥(學校興)’이라는 교육행정의 책무가 중요하게 부여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정황을 보여준다. 전통사회의 교육행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것만 보아도 분명하다고 하겠다.

학회 활동 안내

1. 학술대회 및 학술포럼 활동

❖ 제148차 춘계 학술대회

- 주 제 : 교육행정학 연구의 최신 동향
- 일 시 : 2008년 4월 26일(토) 오후 2시
- 장 소 :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201,208호)
- 내 용

[session 1] 사회: 홍창남(부산대)

1. 패널분석을 통한 1단계 BK21 사업의 연구성과 분석 / 박경호(경운대)
2. 유아교육기관장의 직무 중요도 및 곤란도에 관한 인식 / 김성열, 김정희(경남대)
3. EBS 수능강의 정책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 김병모(고려대)
4.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제도 평가 / 김태환(교과부)
5. 교육정책집행 영향요인의 특성분석-“교육대학발전 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정성수(인제대)
6. 한국 사학정책의 변동 요인 및 과정 분석-국민의 정부 및 참여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 김보엽(교과부)
7. 한국 교육행정학자의 학문 공동체 분석 / 양정호(성균관대)

[session 2] 사회: 김병찬(경희대)

1. 교사의 수업전문성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적 분석 / 박균열(고려대)
2. 조선시대 지방교육행정의 특성 분석 / 박수정(충북대)
3.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학교경영 방향 탐색 / 최경노(덕송초)
4.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정책의 입법영향평가 / 이덕난(중앙대)
5. 지식기반에 근거한 교육전문직의 직능개발 방향 탐색 / 최경희(충북교육청)
6. 학교의 공동체 지향성과 조직현신도의 관계 / 정일화(대전이문고)
7. 새 정부의 학교정책의 방향과 과제 / 양성관(건국대), 전상훈(고려대)

❖ 예비 연구자 학술포럼 1차

- 주 제 : 학위논문 관련 주제 또는 자유 주제
 - 일 시 : 2008년 6월 14일(토)
 - 장 소 : 한국교원대학교 인문과학관 230호
 - 내 용
1. 단위학교의 학습조직 수준이 교사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 허은정(서울대학교)

2. 그룹평가를 활용한 중등학교 다면평가모델 개발 연구 / 서종철(강원대학교)
3. 교육정책의 성과평가 기준으로서 공정성 가치의 적용 가능성 탐색 / 장진욱(경북대학교)
4.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연구 / 양승삼(한국교원대학교)
5.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비용·편익분석 -교무업무시스템을 중심으로- / 김수구(충남대학교)

2. 학술대회 및 학술포럼 활동 계획

❖ 제149차 하계 학술대회

- 주 제 : 교육행정학의 최근 연구동향
- 일 시 : 2008년 8월 20일(수) 10:00-17:40
- 장 소 : 전북대학교 진수당 351호(대형강의실1)
- 주 최 : 한국교육행정학회
- 후 원 : 전북대학교

[일정 안내]

- 10:00-10:20 등록
- 10:20-10:40 개회식 / 사회 : 김도기(본회 사무국장, 교원대)
- 개회사: 김명수(본회 회장, 교원대)
 - 환영사: 서거석(전북대학교 총장)
- 10:40-11:10 기조발표
-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 김명수(본회 회장, 교원대)
- 11:10-12:00 주제발표 I / 사회 : 조동섭(경인교대)
- 주제 1: 대학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조직의 구성과 운영: 전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사례**
/ 염민호(전남대)
- 토론자 / 박남기(광주교대), 유평수(전주대)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4:40 주제발표 II
- 주제 2: 교육정책학 최근 연구동향** / 정성수(인제대)
- 토론자 / 이일웅(중앙대), 김동석(한남대)
- 주제 3: 특수목적고등학교 학교효과 분석: 과학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박소영(KEDI)
- 토론자 / 신상명(경북대), 김이경(충남대)
- 14:40-15:00 휴식
- 15:00-16:40 주제발표 III / 사회 : 정수현(서울교대)
- 주제 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지원 현황과 과제** / 하봉운(경기대)
- 토론자 / 최준열(공주대), 주철안(부산대)
- 주제 5: 고교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실증분석** / 김현진(국민대)
- 토론자 / 한유경(이화여대), 유길한(진주교대)
- 16:40-17:00 휴식
- 17:00-17:40 종합토론 및 폐회 / 사회 : 정수현(서울교대)

❖ 예비 연구자 학술포럼 2차

- 일 시 : 2008년 10월 11일(토) 13:00~18:00
- 장 소 : 한국교원대학교
- 주 제 : 학위논문 관련 주제 또는 자유 주제

[발표자 안내]

- 가. 발표자 : 교육행정전공 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 나. 발표자 수 : 5명 내외
- 다. 발표 내용 : 박사학위 논문 관련 주제 또는 자유 주제
- 라. 발표 신청 방법 : 발표를 원하는 회원은 주제와 개요를 작성하여 학회에 이메일(ksseat@hanmail.net)로 제출.
- 마. 추진 일정
 - 9/1 - 예비연구자 학술 포럼 운영 내용 확정, 홈페이지 공고 및 전체 메일 발송
 - 9/6 - 발표자 참가 신청 마감
 - 9/10 - 발표자 확정
 - 9/30 - 발표자 원고 마감
 - 10/11 - 예비연구자 학술 포럼 개최
- 바. 행사 세부 계획 : 추후 안내 예정임.

❖ 제150차 추계 학술대회

- 일 시 : 2008년 11월 29일
- 장 소 : 한국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와 연계
- 주 제 : 자유주제(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 발표)

❖ 제36차 연차대회 및 151차 학술대회

- 일 시 : 2008년 12월 13일
- 장 소 : 서울
- 주 제 : 한국적 교육행정학의 가능성과 한계



회의 개최 현황

❖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2008년 3월 28일(금) 11:00
- 장 소: 서울 수라온
- 안 건: 2008년 사업계획 수립 및 분과위원 선정

❖ 제1차 학술편찬위원회 개최

- 일 시: 2008년 3월 28일(금) 11:00
- 장 소: 서울 수라온
- 안 건: 전문서 발간 계획 검토

❖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

- 일 시: 2008년 4월 2일(수) 9:00
- 장 소: 서울 교육문화회관
- 안 건: 2007년 학술지 발간계획 수립 및 발간규정 정비

❖ 제2차 학술편찬위원회 개최

- 일 시: 2008년 4월 14일(월) 08:00
- 장 소: 서울 팔래스 호텔
- 안 건: 전문서 발간 세부 내용 협의

❖ 제1차 이사회 개최

- 일 시: 2008년 4월 18일(수) 13:00
- 장 소: 서울교육대학교
- 안 건: 2008 사업계획 심의 의결

❖ 제1차 임시 총회 개최

- 일 시: 2008년 4월 26일(토) :1700
- 장 소: 강원대학교
- 안 건: 2008 사업계획 의결

학술지 논문게재 안내

● 원고접수 :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 접수)

권 · 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26권 (2008년)	1호	2월 29일	4월 30일
	2호	5월 31일	7월 31일
	3호	8월 31일	10월 31일
	4호	10월 31일	12월 31일

● 원고분량 : ①A4용지 20페이지 (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②이를 기준으로 5페이지를 초과 할 수 없으며, 20페이지에서 1페이지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함.

③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최대 25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음.

● 심사료 : 90,000원(심사위원 3인×3만원)

● 게재료

①입금시기: 심사결과 '게재가' 로 결정된 후에 입금

②게 재 료: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300,000원 이상,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00,000원 이상

③입금계좌: 농협 306-02-130364, 예금주: 김명수교육행정학회

● 원고 작성시 홈페이지에서 작성양식(홈페이지→논문접수→접수안내→양식다운받기)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원고 작성 세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학회 홈페이지 참조)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현황

● 신규회원(2008. 1. 1 ~ 2008. 7. 28)

- 일반회원: 국승오, 권순형, 김용, 김전원, 김종기, 류민영, 박민정, 박승란, 박용균, 박용진, 백종진, 서용희, 설인환, 송영균, 송영호, 신상팔, 오세희, 이상기, 우종선, 유공순, 이건설, 이동찬, 이연숙, 이은주, 이정민, 이지현, 임윤섭, 임현수, 정소성, 정애현, 정용우, 하종진, 홍신기 (이상 33명)
- 학생회원: 강아영, 강희경, 고성진, 김금순, 김민지, 김시영, 김종만, 김지선, 김효진, 박명신, 박선용, 송정기, 유성희, 이정민(교원대), 천영진, 홍서연, 황은선(이상 17명)
- 기관회원: 경기도교육청, 서울여대(이상 2개 기관)

● 연회비 납입현황(2008. 1. 1 ~ 2008. 7. 28)

- 일반회원: 강경석, 강경수, 강석봉, 고전, 광상기, 김기은, 김도기, 김명수, 김병모, 김성규, 김세호, 김옥예, 김 용, 김용갑, 김재웅, 김형돈, 김화순, 나임, 남기운, 노관민, 박균열, 박상남, 박선미, 박영달, 박우진, 박 인, 박주호, 박준기, 박춘식, 박형우, 신동한, 신원학, 신재흡, 안길훈, 양승삼, 염민호, 오대수, 오혜정, 오혜정, 위덕대, 유길한, 윤길준, 윤홍주, 이경호,

이광숙, 이광현, 이기명, 이덕난, 이두영, 이상철, 이윤식, 이인희, 이일용, 이재덕, 이정진, 이정화, 이재봉, 장원규, 전상훈, 정명화, 정묘진, 정일화, 정재균, 정제영, 정하소, 정희옥, 조성구, 조희옥, 최경희, 한경수, 한광률, 홍철희, 황윤한, (이상 73명)

- 학생회원: 구자원, 김금순, 박귀성, 이성옥, 이수진, 최원석(이상 6명)
- 기관회원: 가톨릭대성심, 교원대도서관, 교육인적자원부, 대구교육대학교, 사)한국교육, 서울대도서관, 전주교육대학, 평택대학교, 한국교총(이상 9개 기관)

※ 알립니다. 연회비를 납부하신 아래의 회원님께서서는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경희'로 입금하신 분

※ 연회비 납부 관련 문의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 학회 회원가입 활동 협조

- * 교육행정학 발전과 한국 교육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회 참여의 방법 등을 잘 몰라서 아직까지 학회에 가입하지 않고 계시는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들이 학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입 대상 : 교육행정 관련 석사·박사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초·중등학교의 교원,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업무 담당자, 교육행정 관련 기관의 교육전문가 등
- * 회원에게 주어지는 특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행정학연구지 년 간 4권
 - 뉴스레터 년 간 4회
 - 학회 요람 1권
 - 각종 학술대회 참여 가능
 - 교육행정학 연구지 논문 게재 가능 등
- * 가입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 가입 : www.kssea.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회비납부
(가입 회원께서는 회비납부 후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주소 및 연락처 정비

- *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으신 회원님께서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수정하신 이후에 학회 메일(kssea1@hanmail.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회의 홈페이지에 작성하시는 경우 혹시 타인에 의해 오용될 수 있으므로 학회의 메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회 메일 수신에 관한 안내

- * 학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각종 소식이나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회원님들께서는 학회 홈페이지(www.kssea.or.kr)에 접속하셔서 설정해 놓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신 후 사무국으로 전화(043-231-2719) 혹은 메일(kssea1@hanmail.net)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대학의 도메인을 사용하는 회원님께 학회의 단체 안내 메일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 기관 등은 단체메일을 수신 거부하더라도 개인에게 스팸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습니다. 각 포털사이트에서는 단체메일을 수신 가능 하오니, 변경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kssea1@hanmail.net)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비 납부 안내

- * 본 학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학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회비 납부 현황은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연회비 변경 안내

2007년 부터 : 정회원 5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2006년 까지 : 정회원 3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50,000원

입금방법 : 온라인 입금 (농협 306-02-130351 예금주: 김명수교육행정학회)

■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 주 소: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한국교원대학교 인문관 309호
- E-Mail: kssea1@hanmail.net
- 전화번호 · Fax: 043)231-2719
- 회 장: 김명수 (043-230-3433, 010-3337-6159)
- 부회장: 신재철 (062-530-2350, 011-9770-2038)
- 사무국: 김도기 사무국장(043-230-3413, 017-708-0174)
천영진 총무간사(043-231-2719, 018-595-0525)
신은호 편집간사(016-615-1083)

